

- (확인서 발급)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 휴직 확인서(서식3)를 발급

#### □ 출산휴가와 연계

- 시도교육청 「계약제교원 운영지침」에 따라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은 가능하나,
  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\*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
    - ※ 「남녀고용평등법」제18조 및 「근로기준법」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\*\* 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
      - \*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
      - \*\*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은 유급으로 함

#### □ 기타 사항

- (경력)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
  - ※ 「남녀고용평등법」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
- (보수)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
  -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,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
    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
  - (육아휴직 급여 신청)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
  - (인사기록) 학교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
    -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
      - ※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‘총괄서버 퇴직 교원’ 찾기 기능 활용